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11

발의연월일: 2020. 7. 27.

발 의 자:김정재・이 용・이종배

한무경 · 김형동 · 박대출

서일준 · 이태규 · 권은희

김희국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위원 정수를 5명 이상 10명 이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규모의 어린이집 외에도 전국 1,145곳의 직장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 정원이 300명 이상인 어린이집이 21곳에 이르고,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어린이집이 44곳,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어린이집이 129곳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큰 어린이집이 상당수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정수를 10명 이내로 한정함으로써, 해당 연령, 반의 구성 등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5명 이상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학부모 대표는 영유아 연령 등을 최대한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5조제3항).

법률 제 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10명"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학부모 대표는 영유아 연령 등을 최대한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어린이집운영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 ①・	제25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 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	③
집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5	
명 이상 <u>10명</u> 이내의 범위에서	<u>15명</u>
어린이집의 규모 등을 고려하	
여 정할 수 있다. <후단 신설>	<u>이 경우 학부</u>
	모 대표는 영유아 연령 등을 최
	대한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하
	<u> 여야 한다.</u>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